

공정경쟁 정책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SAMSUNG SDS

공정경쟁 정책

제1조 목적

- ①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국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을 포함한 각국의 경쟁법령을 준수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정책을 제정한다.
- ② 회사는 지속적인 혁신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고객의 더 큰 만족을 도모함과 동시에, 고객만족의 목표를 자유로운 시장 경제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완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 기본원칙

- ① 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각국의 경쟁법령(이하 “경쟁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본 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Compliance 가이드(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를 정할 수 있고 회사임직원은 본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 ① 본 정책은 국내 및 해외 지·법인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하 “회사임직원”이라 한다)에 적용되며,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는 회사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임직원은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가 본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본 정책의 예외는 현지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각 국가별로 현지 법률 및 실정에 따라 본 정책의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상대방”이라 함은 회사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협의 중인 개인 및 법인 기타 단체를 의미하며, 중개인/대리인(에이전트, 브로커, 컨설턴트 등), 사업파트너(조인트벤처 등), 협력회사(판매자, 서비스제공자, 하도급업체, 대리점 등) 등을 포함한다.
 2.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친족을 말한다.
- ② 본 정책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현지 각국의 경쟁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제5조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① 일반 사항

1. 경쟁사와의 가격 및 거래조건 합의 금지

회사임직원은 자체 분석, 고객의 의견, 공공 정보 등에 근거하여 가격과 거래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회사는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경쟁사와 합의하는 것을 합의의 형태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한다. 금지되는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양해, 침묵 속에서의 의사 합치 등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2. 경쟁사와의 불필요한 접촉 금지

회사임직원은 사업설명회, 공동 사업참여자들과의 업무 협의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본 정책에 적시된 부적절한 주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경쟁사와의 불필요한 영업상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경쟁사가 업무상 회의에서 해당 부적절한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제기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임직원은 즉시 반대표시를 명확히 하고 그 회의 장소를 떠나야 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회의 장소를 떠난 사실이 적절히 서면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부 금지 행위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가격 담합

가격 담합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 인하 또는 유지하거나 거래 수량·방법 등 거래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경쟁사들과의 합의를 의미한다. 회사임직원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가격 결정에 대하여 협의 또는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

- 서비스 또는 상품 등의 가격에 대한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는 행위
- 최저, 최고가격 또는 목표가격 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 공급 또는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 리베이트, 할인 및 기타 공급 또는 구매 조건을 결정하는 행위
- 비용 또는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후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행위

2. 입찰 담합

회사임직원은 경쟁입찰시 다른 사업자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입찰 담합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토론하여서는 아니된다.

- 최저 또는 최고 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행위
- 사업자간 입찰 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 유도하는 행위
-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 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

3.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회사임직원은 다른 사업자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 분할 공동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정하고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제5조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계속)

③ 정보 교환

회사임직원은 경쟁사와 가격, 생산량, 그 밖에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해서는 아니된다. 시장 동향 등 공개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금지되는 담합이나 공동행위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1. 교환이 금지되는 영업상의 정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 매출 또는 판매량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 조건

2. 회사임직원은 경쟁사와 교류함에 있어서 위 정보에 관련하여 의도치 않게 금지된 행위를 암시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단어의 사용, 속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위에서 예시된 정보에 대한 경쟁사의 의견을 듣는 것 또한 회사임직원이 요청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회사임직원은 시장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 자료, 자발적인 고객 의견 및 기타 합법적인 출처에 기반한 사내 분석 자료를 사용하고 해당 정보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합 및 협회 활동

회사임직원이 동종업계 조합이나 협회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경쟁사들 사이에서 영업상의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 기타 활동은 잠재적인 경쟁법령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조합, 협회에 가입하거나 유사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주의하여야 한다.

⑤ 경쟁사와의 협업

1. 회사임직원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경쟁사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보조 활동을 함께 하거나, 행정 또는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회사임직원은 해당 활동 이전에 본 정책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입찰 절차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쟁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없어야 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회사임직원은 컨소시엄의 목적이 된 사업과 무관한 영업상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6조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① 일반 사항

회사임직원은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쟁법령을 준수하며, 계약의 체결, 이행 및 거래의 전 단계에서 불공정한 수단이나 방법, 기타 거래 조건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부 금지 행위

본 정책에서는 다음의 내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회사임직원은 열거된 행위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각국의 경쟁법령에 따라 불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계약의 체결, 이행 및 거래의 전 단계에서 공정한 수단과 방법, 거래 조건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거래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염가 판매, 고가매입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3. 기타(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 또는 강제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각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등

제7조 지위 남용의 금지

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회사임직원은, 경쟁을 없애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경제적 지위와 능력을 남용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업 부문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거나 사업상 결정을 하는 경우, 그러한 전략이나 결정이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과 관련 있을 때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고객의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거래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객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 고객으로 하여금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배타적인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②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회사임직원은, 하도급업체·대리점 등 회사와의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래상의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입할 의사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거나 금전, 물품, 용역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판매목표 미달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 지연하는 행위
- 거래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지연 또는 미지급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임직원 채용/해임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거나, 영업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

제8조 부당한 지원행위 및 이익 제공의 금지

①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회사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모든 거래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지원·거래하는 등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금·자산·상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사의 인력을 지원하는 행위
-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사업자를 추가하여 거래하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

회사임직원은, 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③ 회사임직원은, 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와의 사이에 자금·자산·상품 등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그 거래대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상법·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 심의절차 등 회사의 준법통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인수합병

① 회사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법적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회사는 인수한 회사에 대해 조기에 직원의 준법교육, 점검·모니터링 등 회사의 내부 통제 및 Compliance 프로그램을 정착시켜야 한다.

제10조 제보

회사임직원은 본 정책 및 경쟁법령의 위반 또는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즉시 Compliance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 조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회사는 제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문의

회사임직원은 경쟁법령, 본 정책 또는 특정 거래나 상황 등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Compliance팀에 즉시 문의하여야 하고, Compliance팀은 적절한 업무지원 및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위반시 조치

본 정책의 위반이 있는 경우의 조치는 준법통제기준 등 회사의 내부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3조 제·개정 등

본 정책의 제·개정 및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준법지원인이 정할 수 있다.

※ 부칙

본 정책은 2021 년 8 월 11 일 제정 시행한다.